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1일
발 의 자: 이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성준, 김종길,
김혜지, 박중화, 성흠제,
소영철, 윤기섭, 이병운,
임규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의 인프라 및 정비업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정비산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210050000000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상훈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10.05.

회신일 : 2022.10.07.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7조(재정지원)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7조(재정지원)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